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법·영·시행규칙”을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시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수집·운반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회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 시행규칙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
1.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 -----.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 ----- -----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⑤(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생략)

<신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⑤(현행과 같음)

⑥ -----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⑦(현행과 같음)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시장이 정한 톤당 단가에 실제 수집·운반한 폐기물량을 곱한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을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u>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u> 제1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 ----- ----- ----- 해당 ----- -----
--	--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제17조(수수료의 감면) ① -----
-----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소관 실·과		청소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담 당	장 재 일
	담 당 자	이 동 섭 (480-5204)